

성관련 위반행위 금지사항(제7조 관련)

구 분	대표적 유형	별 목
성추행	○ 이성간 - 상급자가 강제로 하급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포옹, 입맞춤, 껴안는 행위 - 연장자가 하급자에게 안마나 애무 등을 강요하는 행위 - 여성 생활실에 몰래 들어가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○ 동성간 - 연장자가 하급자에게 성경험 발표 등을 시키거나 하급자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- 침대에 동숙을 요구하거나, 신체를 애무하는 행위	학생지도 위원회 회부
성희롱	○ 언어적 행위 -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- 외모 및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- 이성 관계 및 성적 접촉을 암시하는 언행이나 시각적 행위 - 은연중 이성에게 남녀관계 등 사생활을 물어보는 행위 ○ 시각적 행위 - 음란한 사진, 그림, 낙서,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(컴퓨터 포함) - 이성 앞에서 음란 도구나 음란 사이트를 보는 행위 - 손가락으로 성교를 암시하는 표현을 하는 행위 ○ 육체적 행위 - 부착물이 잘못되었다고 직접 고쳐주면서 신체를 만지는 행위 - 대화중에 아무 생각 없이 신체 일부를 툭툭 치면서 말하는 행위 - 칭찬 또는 격려 하면서 포옹, 머리, 어깨,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쓰다듬는 행위 -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볼을 꼬집거나 악수를 청하면서 검지로 상대방의 손바닥을 긁는 행위 - 음주 시 옆자리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무릎이나 어깨에 손을 올려놓는 행위 - 어깨, 팔, 손, 다리를 주무르게 강요하는 행위 - 음식물을 먹여주도록 지시 및 강요하는 행위 ○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행	학생지도 위원회 회부